

독일목록규칙에서의 단체기입의 전개과정

김 태 수*

〈目 次〉

- | | |
|--------------------|-------------------|
| I. 서 론 | 라. 단체기입 |
| II. 독일목록규칙에서의 단체기입 | 마. 국제목록원칙회의와 단체저자 |
| 가. 단체기입의 전개과정 | III. 분석결과 |
| 나. 단체의 정의 | IV. 결 론 |
| 다. 단체기의 저자성 | |

I. 序 論

근래에 와서 문헌의 서지적 정리법은 국제적으로 표준화되어 가는 경향에 있다. 그러나 그 방법론에서는 국제성이 강하면서도, 실제면에서는 지역성(locality)이 크게 작용하는 학문으로 지적되고 있다.¹⁾ 즉 대상이 되는 자료의 내용이나 형태, 그리고 쓰여진 언어 및 문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목록 이용자가 쓰는 언어와 문자 구조 및 그들의 사고방식이나 검색습성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²⁾

독일목록규칙도 독일의 종합목록을 작성하기 위한 실제적인 면에서 태동한 것으로, 그 기저에는 18세기 서명기입의 관행과 19세기 고전적, 철학적 학문관행이 반영된 규칙으로 지적되고 있다.³⁾

*한남대학교 도서관학과

1) 李載喆, “韓國資料의 書誌的 整理方法에 있어서의 問題點,” 도협월보, 제16권, 제10호, 1975, p.9.

2) 위의 글,

3) Rudolf Lais, “Cataloguing and Bibliographic Developments i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International Cataloguing*, vol.12, no.3, 1983. p.27.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서지적 정리방법의 표준화 요구에 따라 각국 목록규칙의 조정 또는 표준화 시도가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즉 각 도서관이 상이한 규칙을 적용한다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도 시간과 노력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서지정보의 원활한 유통이라는 면에서도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영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마련한 목록규칙(AA Code, 1908)이 출현함으로써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표준화의 계기가 되었다. 그 결과 영미목록규칙과 독일의 프러시아규칙과를 비교하고, 단체기입을 제외한 개인저자의 기입에 관한 통일 가능성이 제기되었다.⁴⁾

그후 1939년 당시 세계의 중요한 목록규칙 19개를 대상으로⁵⁾ 기입에 관련된 조항을 비교하고 특히 프러시아규칙과 영미규칙의 공통점과 상이점을 지적하면서 목록의 국제협력을 위한 양대 규칙의 접근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⁶⁾

한편 제2차 세계대전 후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은 목록의 기본원칙에 관한 국제협정을 위한 회의를 제안하여 1961년 파리(Paris)에서 53개국, 12개 국제기구의 대표가 참석한 국제목록원칙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Cataloging Principles; ICCP)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 결과 영미계목록과 독일계목록을 중심으로, 하나의 목록원칙을 국제적으로 수용하였다는 점에서 목록사의 분수령이 되었으며, 이후에 발표된 각국의 목록규칙에서도 기본원칙으로 수용되었다.

본고는 이러한 발전과정에서 독일목록규칙이 규정하고 있는 단체기입의 전개과정을 고찰함으로써 목록이론상 그 위치를 평가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독일에서 발간된 다음의 목록규칙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1) Instruktionen für die alphabetischen Kataloge der preussischen

4) Rudolf Kaiser, "Vergleichung der englisch-amerikanischen Katalogregeln mit der preussischen Instruktion und die Frage einer internationalen Einigung," *Zentralblatt für Bibliothekswesen*, vol. 28, 1911. p. 416.

5) J.C.M. Hanson, *A Comparative Study of Cataloging Rules Based on the Anglo-American Code of 1908*,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39. pp. xiii-xiv.

6) *Ibid.*, pp. 134-135.

Bibliotheken vom 10. Mai 1899, zweite Ausgabe, in der Fassung vom 10. August 1908. unveränderter Nachdruck. Wiesbaden, Otto Harrassowitz, 1961(이하 프러시아규칙)

2) Regeln für die alphabetische Katalogisierung: RAK. Autorisierte Ausgabe, unveränderter Nachdruck. Wiesbaden, Reichert, 1980(이하 자모순목록규칙)

그러나 프러시아규칙은 2판(1908), 자모순목록규칙은 1980년판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표목의 형식이나 배열규칙은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II. 독일목록규칙에서의 단체기입

가. 단체기입의 전개과정

16세기까지 유럽에서는 단체기입이라는 의미를 목록상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개인 저작물과 단체출판물 또는 저자무기명 저작물 간에 분명한 구분을 하지 않았다. 그후 17세기에 출현한 초기 보드레이목록(Bodleian catalog; 1605, 1620, 1635)에서 저자가 확인된 문헌과 저자를 알 수 없는 문헌의 두 집단으로 구분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단체에서 발간된 출판물도 저자무기명 저작물과 같이 취급되었다. 다만 대학에서 발행된 출판물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대학명아래 기입하였다.⁷⁾ 또 당시 유럽대륙의 목록에서도 대학에서 간행된 출판물은 대학명아래 기입하였으며, 대학 이외의 일부 시민단체나 종교단체에서 간행된 출판물도 관련 단체나 지명아래 기입한 예를 발견할 수 있다.⁸⁾

이상의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유럽에서는 대학이 연구와 학문의 중심이었고, 따라서 대학의 출판물은 서명보다는 대학명으로 더 널리 알려져 있었

7) Eva Verona, "A Historical Approach to Corporate Entries," *Libri*, vol. 7, no. 1, 1956. pp. 5-6.

8) *Ibid.*, p. 25.

음을 알 수 있다.

단체기입을 모든 종류의 단체출판물에 확대 적용한 사람은 하이디(T. Hyde)였다. 즉 저자무기명 저작에 관한 규정에서, 한 국가의 헌법은 그 국명아래 기입하도록 하고 여기에 특정한 법률, 성직자의 출판물이나 보고서도 포함하였다.⁹⁾ 이 규칙도 단체를 그 출판물의 저자로 인정한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출판물의 서명보다는 단체명이나 그 단체의 소재지명을 이용자들이 더 잘 기억할 것이라는 점과, 저자무기명 저작물의 양적 증가, 그리고 이들 저작물의 서명이 무의미하고 길어서 취급에 어려움이 따랐으며, 의회보고서나 행정당국의 공적 출판물의 증가 등의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서, 단체명을 단지 식별상 중요한 요소로 파악하였던 것으로 해석된다.

독일계 목록에서는 서명에 고유명사(nomen proprium)가 포함되었느냐의 여부에 따라 저자무기명 저작물을 두 집단으로 구분하고, 단체를 주제로 취급한 문헌 뿐만 아니라 그 단체에서 발행된 출판물도 일반 저자무기명 저작물과 구분하였다.¹⁰⁾ 기타 독일계 목록의 사례를 보면 대학출판물은 대학명아래, 협회의 출판물은 협회명아래, 지방자치단체의 공식 출판물은 지명아래 기입하였고, 종교단체의 출판물은 지명과 종교단체아래 기입하는 등 각종 기입을 규정하였다.¹¹⁾ 이외에도 형식표목이나 서명아래 기입한 경우도 발견할 수 있다.

19세기에 와서 단체를 기입으로 인정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당시에는 학술단체에 회보 및 그와 유사한 출판물은 서명으로 기입하였으나, 주제나 대상으로서의 단체는 배열어가 된다고 하여 단체를 기입으로 인정하게 되었다.¹²⁾ 그후 19세기 후반에 와서 저자무기명 저작물을 요어(catchword)아래 기입하던 관행이 그 근거를 상실하기 시작하였고, 첫번째 명사아래

9) *Ibid.*, p. 26.

10) *Ibid.*, p. 27.

11) *Ibid.*, pp. 7, 11, 17-18.

12) *Ibid.*, p. 34.

기업하는 방식이 확대되었다. 동시에 서명에 포함된 단체명이나 소재지명 아래 기업하는 방식도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결국 현재 유럽의 목록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각종 단체기업의 유형은 이미 19세기의 각종 목록에서 제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나. 단체의 정의

1) 프러시아규칙

단체를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있으나 저작의 생산을 권유하거나 (Veranlassung) 지원한(mit deren Unterstuzung die Schrift entstande-nist) 공적 단체(Bohorden), 회사(Korporationen)는 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저자의 범주에서 제외하였고(32조), 이것은 인간의 이성과 일치되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결과로 지적되고 있다.¹³⁾

2) 자모순목록규칙

단체는 명칭으로 식별되는 하나의 실체로 규정하고(631조 a), 여기에 조직체, 기관, 기업체, 회의 등 모든 인간집단과¹⁴⁾ 영토상의 실체(영토관할 당국)¹⁵⁾를 단체의 범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들 단체는 법률상의 단체(법인)와는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결정되고 있다(631조). 즉 목록에서의 단체는 식별명칭을 지녀야 하지만 이것은 한 집단의 법률상의 지위와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단체의 법률상의 지위는 법에 정한 특정한

13) Hermann Fuchs, *Kommentar: zu den Instruktionen für die alphabetischen Kataloge der Preussischen Bibliotheken*. 2., durchgesehene Auflage. Wiesbaden, Otto Harrassowitz, 1958. p. 223.

14) *Regeln für die alphabetische Katalogisierung: RAK*. autorisierte Ausgabe, unveränderter Nachdruck, Wiesbaden, Ludwig Reichert, 1980. p. 256에서 협회, 조합, 노동단체, 정당, 노동조합, 국회, 전문학교, 대학, 직업학교, 기관, 문서보존소, 도서관, 박물관, 극장, 회사, 기업체, 은행, 증권거래소, 교회, 교단, 수도원, 회의, 전시회, 박람회, 제일(祭日)후의 주간(週間) 등을 단체의 범주로 예시하고 있다.

15) *Ibid.*, p. 256의 631 b에서 관할당국으로서 국가, 주, 행정구역, 지방자치단체와 그 기관으로서 국회, 정부, 정부의 부처, 기타 당국과 그 부처, 법원, 군사관할당국, 외교대표를 예시하고 있다.

상황의 수행과 연계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은 각국마다 상이함은 물론 동일 국가내에서도 시대에 따라 변하게 된다. 따라서 목록상의 단체와 법인을 통합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고, 또 일관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독일에서는 목록상 단체를 법률상의 위치와는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¹⁶⁾

다. 단체의 저자성

자모순목록규칙에서 저작물을 크게 두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저자가 표시되었거나 확인할 수 있을 때 이것을 개인저작물로 취급하고, 저자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저자무기명 저작물과 같이 취급하였다(17조).

여기서 저자란 말은 저작을 쓴 사람(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으로 규정하여(16조), 개인만을 저자로 인정하고, 단체는 저자의 범주에서 제외하였으며, 단체에서 간행된 출판물은 저자무기명 저작물과 같이 취급하고, 이 저자무기명 저작물을 제작하거나(erarbeitet) 혹은 후원하고 편집한(veranlaßt und herausgegeben) 단체는 단체저자(Urheber)로 규정하였다. (19조, 632조 1).

독일어의 'Urheber'라는 단어가 지니고 있는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장본인, 원흥: 발기인, 창립(창시)자, 원조(元祖); 저작자(Autor)를 뜻하는 말이다.¹⁷⁾ 영어로 번역되는 경우에도 저자(author), 창시자(creator), 설립자(founder); 발원인(originator)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나¹⁸⁾ 일반적으로 영미에서는 'originator'(발원인)의 의미로 번역되어 통용되고 있어,¹⁹⁾

16) Eva Verona, *Corporate Headings; Their use in Library Catalogues and National Bibliographies, A Comparative and Critical Study*. London, IFLA, 1975. p.7.

17) 엡센스 독한사전=*Essence Deutsch-koreanisches Wörterbuc*. 許亨根編. 서울, 民衆書林, 1983.

18) *Cassell's German-English, English-German Dictionary*. Completely revised by Harold T. Betteridge. London, Cassell, 1978. p. 655.

19) *The Prussian Instructions; Rules for the Alphabetical Catalogs of the Prussian Libraries*. Translated from the Second Edition, Authorized August 10, 1908, with an Introduction and Notes, by Andrew D. Osborn,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38
을 비롯하여 이후에 발표된 글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우리말이나 영어에서 이 용어에 상응하는 용어를 발견하기 어렵다.

이 규칙이 도입한 단체저자(Urheber)라는 말은 법률 용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독자적인 명칭으로 식별되는 단체가 저작물을 제작하였거나, 제작을 지원하고 편집한 경우 그 저작물의 단체저자로 취급된다.²⁰⁾ 따라서 단체가 단독이나 공동으로 저자무기명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후원, 편집한 경우로서, 저작물의 제작이나 출판에 참여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저작물에 대한 책임을 지닌 경우 이 단체를 지칭하는 말이다.²¹⁾

독일 규칙에서 이 용어를 도입한 이유 중의 하나는 독일어의 저자(Verfasser)가 라틴어의 저자(autor)나 라틴어에서 파생된 영어의 저자(author)보다 훨씬 좁은 의미로 해석되고 따라서 단체를 저자의 범주에 포함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²²⁾ 결국 독일어의 'Urheber'가 지닌 의미가 포괄적이어서 영미목록규칙에서의 단체저자(corporate author)라는 말도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³⁾ 또 다른 이유는 파리원칙(Paris principles)에서 규정한 9·11항의 해석상의 애매성 때문이었다.²⁴⁾ 즉 단체의 직원에 의해 발행된 저작물에서 그 단체를 저자로 인정하는 것이 독일 목록제에서는 불만이었고, 또 그러한 조건을 결정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많은 시간을 요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따라서 단체저자(Urheber)라는 포괄적인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실제 저자를 결정하는데 소요되는 복잡한 조사과정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

저자성에 의한 논리적 기준으로 단체를 규정하지 않았으며, 또 전적으로

20) Hellmut Braun, "Verfasser und Urheber," in *Aktuelle Problem der Bibliotheksverwaltung*. Herausgegeben von Ewald Wagner, Wiesbaden, Otto Harrassowitz, 1966. p.50.

21) Nora Tamberg, "Trends Toward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f Bibliographic Elements: German Cataloging Reform," *Library Resources & Technical Services*, vol.18, no.4, 1974. p.360.

22) Franz Georg Kaltwasser, "The New German 'Rules for Alphabetical Cataloguing(RAK)' and Their Position in the International Framework," *IFLA Journal*, vol.1, no.4, 1975. p.277.

23) Eva Verona, "The Approach in RAK to Corporate Authorship: the Role of Originator," *International Cataloguing*, vol.3, no.4, 1974. pp.3-4.

24) *Ibid.*, p.4.

형식적인 기준만을 적용하지 않고 이들 양자간의 중간 위치에서 단체를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²⁵⁾

1) 단체저자로서의 단체

(1) 실제로 단체가 저작을 제작하거나 후원, 편집하였는지의 여부는 그 출판물에 표시된 형식과는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단지 편자로 표시된 단체, 또는 표제면상의 상단에 표시된 단체, 또는 발행사항에 발행자로 표시된 단체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²⁶⁾

(2) 그밖에 저자무기명 저작물의 본서명이나 기타서명에 포함된 단체도 다음의 경우 단체저자로 취급하였다(633조).

- ① 그 저작물에서 설명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주제로 취급된 단체
- ② 본서명이 저작의 내용과는 관련없이 일반적이고 형식적인 용어만으로 구성된 출판물로서²⁷⁾ 단체명이 표시되어 있고, 다른 단체가 단체저자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 ③ 저작의 내용이나 표현상 그 단체가 단체저자임을 알 수 있는 경우이다.

(3) 종합서명아래 한 단체의 출판물과 기타 자료를 수록한 합집에서 단체저작이 우위를 차지하는 경우, 그 단체를 단체저자로 취급하였다(634조).

(4) 출판사년감, 출판사기념집, 출판사목록, 출판사안내서 및 출판사의 활동이나 역사에 관한 자료에서 상업출판사도 단체저자로 취급하였다(635조).

25) Eva Verona, *Corporate Headings*, p.15.

26) *Regeln für die alphabetische Katalogisierung*, p. 256의 632조 2의 주 참조.

27) *Ibid.*, p. 257에서 년감(Jahrbuch), 통계(Statistik), 편람(Handbuch), 문고본(Taschenbuch) 등의 일반적인 용어와, 행정적(amtlich), 학술적(wissenschaftlich), 기술적(technisch), 통계적(statistische), 서지적(bibliographische) 등 형식을 표현한 용어만으로 구성된 출판물을 의미함.

2) 단체저자로 인정할 수 없는 단체

다음과 같은 단체는 단체저자로 취급하지 않고 있다.

(1) 저작의 완성에 단지 협력자, 위임자, 후원자, 발행자로서만 관련된 단체

(2) 기존의 저작을 새로운 출판물로 발간하면서 단지 발행자, 편자, 후원자, 번역자, 위임자, 출판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단체

(3) 종합서명아래 한 단체의 저작물과 기타 자료를 수록한 합집에서 기타 자료가 우세한 경우

(4) 등록대장의 형태로 발간된 증명서에서의 단체(636 조).

(5) 상업출판사의 출판물안내서, 출판사 잡지, 지도, 출판사 달력의 경우(637 조).

라. 단체기입

1) 프러시아 규칙

원칙적으로 단체기입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단체를 기입으로 수용하고 있다.

(1) 공적 출판물

법률, 특허, 증서, 교황의 칙서, 사목서한, 기타 공적 출판물에서 단체가 명기된 경우, 그 단체아래 기입하도록 규정하였다(58 조). 비록 상기의 자료에서도 개인이 명기된 경우는 이를 그 개인에 대한 기입으로 인정하였으며²⁸⁾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단체도 저자로서의 단체가 아니라 저작물을 편집하거나 저작을 지원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판매목록, 사업계획서

회사의 판매목록이나 사업계획서에 회사명이 명기된 경우 그 회사명아래 기입하도록 하여, 'Oswald Weigel'이라는 고서점에서 발간한 식물학관련재

28) Hermann Fuchs, *Kommentar*, p.182.

고목록(Botanischer Lagerkatalog von Oswald Weigel's Antiquarium in Leipzig)은 이 서점명아래 기입하도록 예시되었다(60조). 그러나 이 경우도 회사명이 인명으로 구성된 경우로만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개인명만이 저자기입으로 인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42, 143조).

그러나 인명이 아닌 경우에도 실제로 기입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즉 'Akademischer Verlag in München'는 'Verlag, Akademischer, München'과 같은 저자기입으로 취급되고 있다(145조). 이것은 사실상 단체기입이면서도 프러시아규칙에서는 이것을 특별히 단체기입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3) 단체와 관련된 기타 출판물

특정주제나 지역으로 한정된 법률, 명령, 기타 법률자료의 합집은 편자아래 기입하도록 규정하였으며(40조), 동일 저작의 상이한 판으로서 서명이 다른, 규정이나 공적출판물은 항상 첫판의 공식서명아래 기입하도록 규정하였고(217조), 협회나 기관의 재정서, 인명부, 연간보고서, 년중행사록은 서명아래 기입하도록 규정하였다.(61조). 따라서 단체는 개인저자로 일부 바꾸어 놓을 수 있고, 기타는 서명아래 기입하도록 하여, 단체기입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영미계 목록과 가장 큰 대립현상을 보이고 있다.

2) 자모순목록규칙

저자무기명 저작물에서 단체저자가 본서명에 표시되었거나 본서명에 추가된 경우 그 단체아래 기본기입하도록 규정함으로써(639조 1), 단체저자와 관련된 여러가지 상충되는 요소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즉 한 개인과 단체가 동시에 표시된 저작물에서는 언제나 개인이 우선한다.²⁹⁾ 이것은 그 저작의 완성에 어떤 역할을 했는가와는 관계없이 항상 개인이 우선한다. 이것은 개인저자가 표시되지 않은 출판물에서도 저자가 확인

29) Franz Georg Kaltwasser, "The New German 'Rules for Alphabetical Cataloguing(RAK)' and Their Position in the International Framework," p. 281.

가능하면 이에 따른다. 목록작성자의 처지에서 보면 이것은 기업 선정시 대단히 편리한 것이다. 또한 이것은 단체기업의 수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지적한 단체저자(Urheber)인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은 그다지 용이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1) 관할구

일정한 구역(영토) 내에서 국가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단체(국가, 연방을 구성하는 국가, 주) 및 지방행정단위(시, 군, 구)를 단체로 규정하고(649조), 그 범위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① 관할구의 범위

영토관할구의 하부부처에 소속된 기관으로서 현저하게 입법, 사법, 행정, 외교, 군사적 기능을 수행하는 단체(의회, 행정부, 정부의 각 부처, 법원, 출판국, 공사, 군대)와 영토관할구의 하부기관이나 소속단체로서 독자적 명칭을 지니고 있고, 그 명칭이 관할구의 일반적인 기능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기능을 고려하지 않고 관할구의 부처로 취급하였다(650조).

그러나 영토관할구에 소속된 하위단체로서 특별히 그리고 직접적으로 교육, 문화, 학술, 기술, 상업, 종교, 사회적 문제와 관련된 단체(학교, 대학교, 극장, 도서관, 문서보존소, 박물관, 연구소, 천문대, 동식물원, 교통설비, 우체국, 상공회의소, 교회, 병원, 수용소), 기관 및 협회는 관할구에서 제외하였다(651조).

② 단체저자로서의 관할구

다음의 경우에는 관할구나 그 하위부처를 단체저자로 취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 저자무기명 저작물을 제작하거나 제작을 지원하고 편집한 경우(651조 1)
- ㉡ 관할구가 저자무기명 저작물의 본서명이나 기타서명에 표시된 경우(652조 2)
- ㉢ 헌법이나 조약 및 그 합집(653조 a)

㉔ 행정관보, 규정집, 법령공보, 예산서(653조 b)

㉕ 법률, 명령 및 그 합집(653조 c)

상기 규정 가운데 특이한 사항은 관할구가 저자무기명 저작물의 서명에 포함된 경우로서, 출판물의 형태나 관할구의 역할과는 무관하게 그 출판물에 표현된 형식에 따라 단체저자로 취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관할구명아래 기입

㉑ 헌법 및 그 합집

관할구의 헌법 및 그 합집은 특수규정으로 취급하여 비록 개인저자(1~3인)가 표시된 경우라도 항상 관할구명아래 기본기입하도록 규정함으로써(656~657조), 저자가 표시된 저작물은 그 저자아래 기본기입하도록 규정한 일반원칙(601조)에서 예외적으로 취급하였다.

㉒ 조약 및 그 합집

조약도 특수규정으로 취급하여 2개 국가 이상의 조약은 비록 개인저자(1~3인)가 표시되었거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도 항상 관할구명아래 기본기입하도록 규정하여(659, 660조), 헌법과 함께 저자아래 기본기입하지 않고 단체아래 기입을 규정하였다.

㉓ 행정관보, 규정집, 법률공보 및 예산서는 관할구명아래 기본기입하도록 규정하였다.

㉔ 법률, 명령

관할구에서 공포된 법률은 비록 개인저자(1~3인)가 표시되었거나 확인이 가능한 경우라도 본서명아래 기본기입하도록 규정함으로써(663조), 단체저자가 표시된 경우 그 단체아래 기본기입한다는 기본원칙(639조)에서 이탈하였고, 특히 개인저자가 표시되었거나 확인가능시 항상 저자아래 기입하도록 규정한 일반원칙과도 반하는 것으로, 이 규칙에서는 이것을 특수규정으로 수용하였다.

(2) 종교단체

① 종교단체 및 그 범위

규범이나 의식, 교리 등에서 독자적인 단체와 이들 단체의 연합체를 종교단체로 규정하고 그 범주에는 지역교회, 교회연합체, 교파와 종교단체의 지역행정단위(교구, 대교구, 관구)와 교단, 종교회의, 수도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667 조).

그러나 한 종교단체의 소속단체거나 하위단체로서 직접 교육, 문화, 학술, 과학, 사회적 문제에 관련된 단체(학교, 도서관, 문서보존소, 박물관, 연구소 등)는 종교단체에서 제외하였으며, 종교단체의 소속단체거나 하위단체로서 그 명칭이 일반적으로 종교단체의 조직임을 의미하지 않는 경우 그 단체의 기능과는 관계없이 종교단체에서 제외하였다(669 조).

② 단체저자로서의 종교단체

이상의 종교단체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단체저자로 취급된다.

- ㉠ 저자무기명 저작물을 제작하거나 지원·편집한 경우(670 조 1)
- ㉡ 저자무기명 저작물의 본서명이나 기타서명에 포함된 종교단체(670 조 2)
- ㉢ 교회법과 조약 및 그 합집(671 조 a)
- ㉣ 행정관보, 규정집, 예산서(671 조 b)
- ㉤ 명령(671 조 c)
- ㉥ 저자무기명 전례서(671 조 d)

상기 규정에서도 저작물의 서명에 포함된 종교단체는 그 단체의 역할과는 무관하게 단체저자로 취급되고 있다.

③ 종교단체아래 기입

- ㉦ 교회법 및 그 합집은 비록 개인저자(1~3인)가 표시된 경우에도 종교단체아래 기본기입하도록 규정하여(674 조), 헌법의 기입에서 규정한 것과 같이, 개인저자가 표시된 저작물은 개인저자아래 기본기입하도록 규정한 일반원칙에 반하는 원칙을 수용하고 있다.

- ㉔ 종교단체간의 협약 및 조약에서도 비록 개인저자(1~3인)가 표시되었거나 확인가능하더라도 종교단체아래 기입하도록 규정하여(675, 676 조), 관할당국간의 조약에 적용한 원칙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였다.
 - ㉕ 종교단체의 행정관보, 규정집, 예산서는 관련 종교단체아래 기본 기입하도록 규정하여(677 조), 영토폐관할구의 행정관보, 규정집, 예산서에 적용한 원칙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였다.
 - ㉖ 종교단체의 명령, 결정 및 그 합집은 비록 개인저자(1~3인)가 표시되었거나 확인이 가능한 경우라도 본서명아래 기본기입하도록 규정하여(678, 679 조), 영토폐관할구의 법률과 명령에 적용한 원칙을 일관하게 적용하고 있다.
 - ㉗ 종교단체의 전례서 및 그 합집은 본서명아래 기본기입하도록 규정하여(680 조), 단체저자가 표시된 경우 저자무기명 저작물은 그 단체아래 기본기입하도록 규정한 일반원칙(639조)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 (3) 회의, 박람회, 미사
- ① 단체저자로서의 의의

학술, 문화, 정치, 경제, 종교, 사회적 목적을 위한 개인과 단체의 집회를 회의로 규정하고(682 조), 다음의 경우 회의를 단체저자로 취급하였다.

 - ㉘ 단체로서의 회의가 저자무기명 저작물을 제작하거나 지원·편집한 경우(686 조 1)
 - ㉙ 저자무기명 저작물의 본서명이나 기타서명에 포함된 회의(686 조 2)
 - ㉚ 개인저자(1~3인)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혹은 다른 단체가 본서명에 표시되지 않은 경우, 회의는 그 회의의 프로그램 및 회의보고서의 단체저자로 취급하였다(686 조 3). 상기 규정에서도 저작물의 서명에 포함된 회의는 그 회의의

역할과는 무관하게 그 저작물의 단체저자로 취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㉞ 회의에 참여한 여러 개인이나 단체의 출판물의 합집은 일반적으로 그 회의를 단체저자로 취급하고(687 조 2), 그 합집이 한 단체에 의하여 지원·편집된 경우에는 그 단체를 단체저자로 규정하였다(687 조 3).

② 회의아래 기입

회의 출판물의 표제면상의 본서명이나 기타서명에 회의명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본서명아래 기본기입하고(690 조 2), 표면에 회의명이 표시된 경우에는 그 회의명아래 기본기입하도록 규정하여(691 조), 출판물의 표현형식에 따라 기입이 결정됨을 알 수 있다.

마. 국제목록원칙회의와 단체저자

1) 단체기입의 수용

1961년에 개최된 국제목록원칙회의(ICCP)의 목적은 저자서명목록에서 기입의 선정과 형식에 관련된 기본원칙을 제정하는 것이었다.³⁰⁾ 이것은 새로운 형태의 저자성이나 체제로 생산되는 방대한 자료를 처리함에 있어 기존의 규칙은 낡고 부적절하며 특히 본질적인 면에서 새로운 출판물의 목록에 부적합하다는 견해 때문이었다. 따라서 국제협력이 가능한 일련의 목록원칙의 수립을 시도하게 된 것이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프러시아 규칙에서는 원칙적으로 단체를 기입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그 영향권에 있는 오스트리아, 스위스, 네덜란드 등의 목록규칙과 함께³¹⁾ 단체기입을 인정하는 영미목록규칙과 대립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이 회의에서 단체를 기입으로 인정함으로써 목록의 국제적 협력이라는 면에서

30)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ataloguing Principles, *Report*. London, IFLA International Office for UBC, 1981. p.24.

31) J.C. M. Hanson, *op. cit.*, p. 47.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되고 있다.³²⁾

이처럼 독일이 단체기입을 수용하게된 배경에는 2차대전 이후 목록규칙 개정움직임과 관련이 있다. 특히 전쟁으로 파괴된 도서관의 재건과 장서의 확보 및 목록작성이 중요한 관심사였다. 이 중에서도 단체에서 발행된 출판물을 포함한 저자무기명 저작물의 취급과 프러시아규칙의 복잡한 문법적 배열원칙은 목록의 국제협력이라는 점에서 장애요인으로 지적되었다.³³⁾ 아울러 전세계 비독어권으로 독일목록규칙이 확산되지 못한 요인 중의 하나가 단체기입을 인정하지 않는 프러시아규칙 때문이라는 지적이었다.

³⁴⁾

따라서 단체기입원칙의 수용은 영미목록과 독일목록간의 목록이론을 조정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대적인 협동목록의 출발점이 되었다. 그러나 단체저자성 자체에 대한 찬반론은 독일목록계 내부에서는 이후에도 계속되었다.³⁵⁾

2) 단체아래 기입

(1) 단체의 정의

일반적으로 영미목록규칙에서는 단체를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하여 식별 명칭이 없는 일단의 집단도 단체로 인정하였으나, 이 회의에서는 단체명이나 집합명칭으로 알려진 기관, 조직체 또는 개인의 집단으로 정의하여

32) *Statement of Principles*, Adopted by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ataloguing Principles, Paris, Oct., 1961. Annotated Edition with Commentary and Examples by Eva Verona. London, IFLA Committee on Cataloguing, 1971. p.40.

33) Franz Georg Kaltwasser, "Entstehung, Strukturen und Anwendung der neuen Regeln für die alphabetische Katalogisierung(RAK)," *Zeitschrift für Bibliothekswesen und Bibliographie*, vol. 21, 1974. pp. 3, 14-18.

34) W. Bauhuis, "Katalogreformen," *Zeitschrift für Bibliothekswesen und Bibliographie*, vol. 1, 1954. p.194를 Andrew D. Osborn, "Cataloging and Cataloging Code in Other Countries Today," *Library Quarterly*, vol. 26, 1956. p. 280에서 재인용.

35) Nora Tamberg, *The Development of Uniform Bibliographic Principles as the Basis for Multi-National Cataloging Codes and Internationally Compatible Bibliographic Standards*, University of Pittsburgh, 1981. p. 21.

(9조 1), 목록 목적상 단체는 집합적인 식별명칭을 지녀야 하며, 따라서 명칭없는 집단은 단체에서 제외하였다.

(2) 단체의 저자성

이 회의의 원칙선언(statement of principles)에서는 저자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며, 아울러 개인저자나 단체저자라는 용어를 구분하지도 않고 있다. ‘단체아래 기입’(9조), 또는 ‘저작은 단체명아래 기본기입한다’(9조 1)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저자라는 용어의 사용을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

(3) 단체기업

단체아래 기입되는 경우를 2가지로 규정하였다.

- ① 저작의 성질상 한 단체의 집합의지나 활동을 표현한 경우(9조 11)
- ② 저작의 성격과 관련하여 단체가 그 저작의 내용에 종합적인 책임을 지고 있음을 서명이나 또는 표제면상의 표현이 암시하는 경우(9조 12)이다.

상기 내용중 ①은 저작의 내용과 단체와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실상 단체를 저자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단체가 저작의 기능에 보조역할(편자)을 한 경우에는 부기입으로 작성하도록 규정함으로써(9조 2), 이러한 해석이 더욱 설득력을 지닌다. 한편 ②는 서명이나 표제면상의 표현을 기준한 것으로, 단체기업은 저자성이란 기준과 저작물 자체에 표시된 물리적 기준이 공존하게 되었다. 이것은 단체를 저자로 규정한 영미계 목록과 이를 인정하지 않는 독일계 목록과의 상반된 견해를 조정한 타협의 산물로 보인다. 따라서 출판물에 구체화된 저작의 내용인지 아니면 서명이나 표제면상의 형식상의 표현인가를 결정하는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³⁶⁾ 심지어 원칙선언의 주석판의 저자도 이 문제에 대한 불만을

36) Ake I. Koel, "Can the Problems of Corporate Authorship be Solved?" *Library Resources & Technical Services*, vol. 18, no. 4, 1974. p. 350.

제기한 바 있다.³⁷⁾ 결국 이후의 각국 목록규칙에서도 상기 규정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에 따라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여, AACR 1967은 ①의 기준을 따라 저자성이라는 기본원칙을 수용한 것이고, 자모순목록규칙은 표현의 문제로 단체기입을 수용하게 된 것이다.³⁸⁾

Ⅲ. 분석결과

가. 단체의 정의

독일에서는 자모순목록규칙에서 비로소 단체를 명칭으로 식별되는 하나의 실체로 정의하여 식별명칭의 존재여부로 단체를 규정하였다. 이것은 국제목록원칙회의에서 목록상 단체는 집합적인 식별명칭을 지녀야 한다는 규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단체의 저자성

프러시아규칙에서는 저자의 역할을 개인만이 수행할 수 있는 창조적인 활동으로 인식하고, 저작의 생산을 자극하거나 지원한 단체는 저자의 범주에서 제외하였으며, 이것은 인간의 이성과도 합치되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귀결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자모순목록규칙에서도 개인만을 저자로 인정하고, 저작을 제작하거나 지원하고 편집한 단체는 단체저자(Urheber)로 규정하여 저자(Verfasser)와 구분하였다.

일반적으로 저자성은 창조적 활동과 관련된 것이다. 즉 저자라는 말은 저작의 창조에 참여한 개인의 역할로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개인저자의 책임성을 단체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부적합하다는 견해

37) *Statement of Principles*, p. 41.

38) Michael Gorman, "Changes in Cataloguing Codes: Rules for Entry and Heading," *Library Trends*, vol. 25, no. 3, 1977, pp. 595-596.

이다.³⁹⁾ 즉 개인과 저작과의 관계가 단체와 그 출판물과의 관계와는 상이하다는 점이다. 개인은 저작의 내용을 쓰고 발간형식을 결정하는데 반하여, 단체는 발간형식을 결정하는 중간인물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이 중간인물이 출판물에 표시되었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항상 존재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단체저자성은 사실상 저자성이 혼합된 성격의 저자성으로 규정하기도 하였다.⁴⁰⁾ 이밖에도 단체의 책임성을 결정적인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모든 기준을 포기하는 것이며,⁴¹⁾ 저작의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이라는 표현은 이론적인 배경없이 도입된 것으로 단체가 어떻게 저작의 저자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은 되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되었다.⁴²⁾

사실상 단체는 저작의 내용을 쓰고 구성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개인 저자성의 기준을 단체에 확대 적용한 종래의 영미목록규칙은 불합리한 것으로, 단체저자성을 포기하는데 1세기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었다.

다. 단체의 유형

자모순목록규칙에서 처음으로 단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즉 식별명칭을 지닌 모든 인간집단과 영토상의 실체(영토관할구)를 단체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목록상 단체는 법률상의 단체(법인)와는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결정된다고 규정하여, 목록상 단체를 포괄적인 의미로 수용하였다. 그러나 '제일(祭日)후의 주간(週間)'을 단체로 규정한 논리적 근거를 발견하기 어렵다.

39) Eva Verona, *Corporate Headings*, p. 12.

40) *Ibid.*

41) V.A. Vasilevskaya, "Limits to the Use of Entries under Corporate Authors: the Cataloguing of Laws and Treaties," in: ICCP, *Report(Working Paper no. 5)*. London, IFLA International Office for UBC, 1981. p. 170.

42) Ake I. Koel, "The Corporate Complex(Including Choice and Form of Entry)," in: *The Making of a Code*, Edited by Doris Hargrett Clack.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80. p. 165.

라. 단체기입

1) 지명아래 기입

독일 목록규칙에서는 기입으로서의 지명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헌법과 헌장, 조약, 행정관보 등은 비록 개인저자가 명기된 경우라도 그 관할구명아래 기입하도록 하였다.

사실상 지명은 단체명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영미목록규칙에서 이를 규정한 것은 17세기 이래 영국계 목록 관행을 답습한 것으로⁴³⁾ AACR 1967의 98, 99조를 폐지할 때까지(1972년) 유지되었으며, 기존의 관행이나 경제적 이유에서 목록 기능상의 원칙이 무시된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지명과 관할구명은 목록에서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이 두 개념을 목록에서 완전히 구분할 수가 없다는 점이다. 때로는 지명으로 때로는 관할구명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AACR 1967의 초안에서도 이 두가지 개념은 서로 중복되는 복합적인 개념으로 파악하였다. 최종 규칙에서 각각의 의미로 구분, 사용하였으나 이 문제에 대한 만족스러운 해답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이 없음을 고민하고 있다.⁴⁴⁾

2) 개인저자와 단체저자

프러시아규칙에서는 저자성의 원칙에서 단체를 저자로 인정하고 않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단체기입을 일부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개인이 명기된 경우에는 저자기입으로 인정하여 항상 개인을 우선하였다.

자모순목록규칙에서는 저자무기명 저작물에서 단체저자(Urheber)로서의 단체가 본서명에 포함되었거나 기타서명에 포함된 경우, 단체아래 기본기

43) Eva Verona, "A Historical Approach to Corporate Entries," p.31.

44) C. Summer Spalding, "Background, Development, Problems, and Essential Characteristics," in: *The Code and the Cataloguer*. Edited by Katherine H. Packer and Delores Phillips.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69. p.13.

입하도록 규정하여 단체와 개인이 동시에 표시된 저작물에서는 언제나 개인을 우선하도록 하였다.⁴⁵⁾ 이것은 단체가 그 출판물의 완성에 어떤 역할을 했는가와는 무관하게 결정된다. 개인저자가 표시되지 않은 출판물에서도 저자를 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위의 기준이 적용된다. 이것은 목록작성이나 이용자에게 쉽고 편리한 방법으로서 사실상 단체기입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비록 출판물의 검색과정에서 단체기입이 필요하고도 유익한 것으로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체기입을 제한하려는 경향은 다음의 규정에서 확인이 가능하다.⁴⁶⁾

- ① 저자기입을 우선하고 다만 저자무기명 저작물에서만 단체를 단체저자(Urheber)로 인정하여 단체기입을 규정하였고(632 조)
- ② 단체저자아래 기본기입은 형식적인 조건과 관련해서 결정되도록 하였다. 즉 단체명이 본서명에 포함되었거나 기타서명에 포함된 경우에만 단체기입을 인정하였다(639 조).
- ③ 단체아래 부기입은 도서관의 재량에 따라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643 조, 주 참조).
- ④ 관할구의 법률은 항상 본서명아래 기입하도록 규정한(663 조) 점에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모순목록규칙에서는 저자기입, 단체기입, 서명기입을 다음과 같이 해결하였다. 먼저 어떤 기입을 결정할 것인가는 두가지 과정으로 결정된다. 즉 개인저자의 기본기입으로 하거나 저자무기명 저작물과 같이 취급한다. 개인저작물에서는 저자를 기본기입으로 한다. 개인과 단체가 한 저작물에 표시된 경우에는 항상 저자아래 기입을 우선한다. 그러나 저자가 표기되지 않았거나 4인 이상이면 저자무기명 저작물과 같이 취급

45) Franz Georg Kaltwasser, "The New German 'Rules for Alphabetical Cataloguing(RAK)' and Their Position in the International Framework," p. 281.

46) Manfred Langer, "Zur Frage der Eintragung unter Urhebern nach den Regeln für die Alphabetische Katalogisierung(RAK)," *Zentralblatt für Bibliothekswesen*, vol. 91, 1977. p. 363.

한다. 저자무기명 저작물에 단체저자가 표시된 경우에는 이 단체아래 기본 기입하고, 여러 단체가 표시된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단체나 첫번째 표시된 단체아래 기입하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어떤 저작물을 단체로, 어떤 저작물을 서명으로 기입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한계가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지 않다. 여기에는 몇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다. 첫째, 저자의 개념에 단체를 포함시켜 확대 해석하는 경우에는 지적인 책임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 경우 단체를 저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는 조사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또 단체명이 그 저작에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단체아래 기입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둘째, 단체명을 특정 출판물의 식별수단으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자료의 형식상의 표현양식, 특히 서명이나 표제면에 표현된 형식이 중요시된다. 하나는 자료의 내용에 기초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료의 표현형식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자모순목록규칙은 이 두가지 극단적인 상황의 타협물이다. 따라서 단체기입을 결정할 때 두가지 단계를 거친다. 첫째, 단체가 저작물에서 단체저자(Urheber)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자료의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둘째, 단체저자가 기본기입이 되기 위해서는 서명에 표현된 형식도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즉 단체가 본서명에 포함되어야 하고, 식별수단으로서 서명을 완벽하게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으로, 이것은 형식상의 문제이다.⁴⁷⁾

이와 관련하여 영미목록규칙에서는 학술조사나 과학기술 관련분야에서 한 저자의 저작이 다른 한 단체에서 인가, 위임, 발행, 후원된 경우, 문제가 되고 있다. 일반적인 선정기준은 개인의 직위 여부 및 편집업무의 공식적 무 여부로 결정되도록 규정하였다(AA 1908, ALA 1949). 그러나 이것은 서지정보와 무관한 기준으로서 사실상 목록작성자가 판단해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또 상기 범주의 자료에서 저자가 3인 이하거나 4인 이상이

47) Franz Georg Kaltwasser, "The New German 'Rules for Alphabetical Cataloguing(RAK)' and Their Position in the International Framework," p. 281.

더라도 대표저자가 표시된 경우는 개인저자성으로 취급하였다(AACR 1967). 그러나 단체가 4 이상이고, 대표저자(단체)가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단체저자아래 기입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4인 이상의 공저서에 대한 규정과도 모순되는 것으로, 가급적 서명기입의 사용을 피하기 위하여 단체저자성의 원칙을 확대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⁴⁸⁾ AACR 1978에 와서야 이 불합리한 규정을 제거하였다(21. 6C2).

사실상 개인저자기입이나 단체기입이나 하는 것은 목록에서 항상 제기되어 온 문제로서, 이 문제의 해결방안은 개인저자와 상충되지 않고, 전반적으로 단체의 창조적 활동 결과로 인한 저작물에서만 단체기입을 인정하는 것이다. 기타의 경우에는 서명아래 기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은 저작과 가장 관련있는 명칭, 즉 단체기본기입원칙을 배제하는 것으로 국제협력에도 유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정치, 종교지도자의 저작

프러시아규칙에서는 구체적으로 정치지도자의 저작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자모순목록규칙에서는 기본적으로 개인저자의 저작으로 취급하였다. 이것은 사목서한이나 회칙(回勅)에 대해 적절한 단체표목으로 부기입하도록 규정한(673조 3) 점에서도 알 수 있다.

사목서한은 일반적으로 대주교나 주교가 직접 작성한, 분명히 개인적 서한으로서 대개 작성자의 이름이 표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 서한은 개인저자성의 저작으로 취급되는 것이 정당할 것이다.

교황의 회칙도 같은 맥락에서 개인저자성의 저작으로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회칙이란 것은 일반 신자를 대상으로 각종 사회문제나 사건에 대한 교황의 생각을 표현한 회람용 서한이다. 비록 회칙의 최종형식에 교황이 관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교황의 생각이 담겨져 있다. 따라서 이 회칙은 저자성이 혼합된 성격의 자료로 볼 수 있다. 지적

48) Michael Gorman, *A Study of the Rules for Entry and Heading in the Anglo-American Cataloguing Rules, 1967, British Text*. London, the Library Association, 1968. pp.13-14.

책임성을 기준으로 할 때, 그리고 사실상 회칙은 항상 교황명으로 식별되고 있다는 점에서 교황의 개인 저작으로 취급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사실상 출판물이 공적 출판물인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다. 취임연설이나 기타 공직에서 행한 연설과 국가원수의 성명서나 대의회 메시지 간의 본질적인 차이를 발견하기는 어렵다. 실제로는 두가지 형태의 자료가 사실상 그 직책을 반영한 것으로 전적으로 공식적인 활동일 수도 있고, 또는 개인 의견의 피력일 수도 있다.

따라서 행정수반의 포고, 행정명령, 법률은 법률의 일반원칙에 따라 취급되어야 할 것이며, 반대로 연설문, 성명서, 메시지, 사무서한, 교황의 회칙, 대칙령 등은 개인저자의 저작으로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국제목록원칙회의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헌법과 헌장

자모순목록규칙에서 헌법은 개인저자가 표시된 경우라도 항상 관할구명 아래 기입하도록 특수규정함으로써, 저자가 표시된 저작물은 그 저자아래 기입하도록 규정한 일반원칙에서 예외적으로 취급하였다.

일반적으로 헌법이나 헌장은 여러기관, 단체, 전문가, 시민회의 등의 토론을 거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 경우 관할구의 시민이 헌법이나 헌장의 완성에 여러 방식으로 협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단체저자의 개념을 적용할 수 있겠으나 분명히 이론적 기반이 약하다. 즉 'Australia, Constitution'이란 표목은 순수한 형식표목이지 문헌에 대한 저자의 책임성을 표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⁴⁹⁾

사실상 특정 국가의 헌법에서 특정 국가가 저자로 취급될 수는 없는 것이다.

49) James A. Tait, *Authors and Titles; an Analytical Study of the Author Concept in Codes of Cataloguing Rules in the English Language, from that of the British Museum in 1841 to the Anglo-American Cataloguing Rules 1967*. London, Archon Books, 1969. p. 137.

5) 범 료

자모순목록규칙에서는 관할구에서 공포한 법률은 비록 개인저자가 표시되었거나 확인이 가능한 경우라도 본서명아래 기입하도록 특수규정으로 취급하여, 단체저자가 표시된 경우 그 단체아래 기본기입한다는 기본원칙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특히 개인저자가 표시된 경우 저자아래 기본기입하도록 규정한 일반원칙과도 반하는 것으로 지적할 수 있다.

단체와 관련하여 법률은 사실상 저자와 관련지을 수 없다. 그것은 저자성이 대단히 복잡하기 때문이다. 법률은 저자성의 결과가 아니라 복잡한 제도적 과정을 통해서 생성되는 것이 통례이다.⁵⁰⁾ 대부분의 법률은 일반 국민이 아니라 관련전문가의 토론과 수정을 거치게 된다. 따라서 헌법이나 헌장에 단체저자성을 적용하는 정당성이 모든 법률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 그밖에도 한 관할구의 법률이 다른 관할구에 유효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복잡한 문제의 해결에는 서명아래 기입이 최선의 방안으로 보인다. 필요한 경우 관할구명아래 부기입할 수 있을 것이다.

6) 조 약

서명국가의 수와 관계없이 모든 조약은 우선하는 서명당국이나 자모순으로 우선하는 이름아래 기입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조약에 개인저자가 표시되었거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도 항상 관할구명아래 기본기입하도록 규정하였다.

사실상 조약은 순수한 저자표목이 거의 채택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조약에 단체기입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⁵¹⁾ 실제로 조약에 서명하는 목적은 지적 내용에 대한 책임성이 아니라 단순히 기준을 조건으로 규정을 지키겠다는 서약이지, 저자와

50) Werner B. Ellinger, "Catalog Entries for Primary Legal Sources," *Library Resources & Technical Services*, vol. 12, no. 3, 1968. p. 353.

51) Eva Verona, *Corporate Headings*, p. 40.

저작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⁵²⁾ 이러한 생각이 타당하다고 한다면⁵³⁾ 조약에 단체저자성을 적용하는 것은 이론적 기반이 약하다. 이외에도 조약은 서지적으로 독특한 조건을 지니고 있다. 즉 각국에서 만든 조약의 각 판은 표제면상에 표기된 당사국명의 순서가 상이하다. 따라서 자국명아래 기입이나, 첫번째 적힌 당사국아래 기입하는 것은 국제협력이라는 면에서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조약은 표제아래 기입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주된 저자가 없는 공저서를 서명아래 기입하는 원칙과도 일관성을 유지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7) 종교단체의 기입

자도순독특규칙에서는 교회법, 종교단체간의 협약, 조약 및 행정관보, 규정집, 예산서는 관련 종교단체아래 기본기입하고, 종교단체의 명령이나 결정, 전례서는 본서명아래 기본기입하도록 규정하였다. 교회와 관련된 저작들을 관련 교회명아래 기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것은 특정 교회나 교파가 사용하는 전례서의 기원은 확인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사실상 역사적으로 너무 오래되었고, 또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오늘에 이른 이들 저작물에서 특정 교회와의 관계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실제로 불가능하고, 이들 저작물의 사용범위가 특정 교파나 교회의 차원을 넘어서고 있다는 점에서 자모순목록규칙이 규정한 서명기입이 효과적으로 보인다.

저작물의 기원을 확인하는 일은 신학적, 역사적 연구가 전제됨으로 일반 목록작성자나 이용자로부터 이것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전례서는 서명아래 기입이 국제협력이라는 면에서도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8) 회의아래 기입

출판물에서 회의명이 서명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기입을 결정하

52) Werner B. Ellinger, *op. cit.*, p. 354.

53) P.K. Escreet, *Introduction to the Anglo-American Cataloguing Rules*. London, Andre Deutsch, 1971. p. 105.

도록 하였다.

9) 기본기입의 문제

일반적으로 도서관에서는 서명이나 저자명(인명) 또는 주제명(분류)을 기입으로 인정하여 사용해 오고 있다. 이 가운데 주제명기입은 목록자가 특정도서의 주제 또는 형식을 그 범위에 따라 언어로 표현한 것으로, 관련 주제의 도서를 목록상 한자리에 모으는 기능이지 특정도서의 식별수단이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도서의 식별요소로서의 서명과 저자명 중에서 하나를 택일한다면 어느 요소가 식별수단으로 우위에 있는가를 결정하는 것이 문제이다. 이것이 곧 기본기입선정의 기준이 되어 왔다.

리 재철교수에 의하면 “서명기입은…목록이론상 저작에의 직접접근책이라는 점에서 저자명을 한단계 거쳐서 간접적으로 저작에 접근하는 서양의 저자기입보다 우위에 선다”⁵⁴⁾고 지적하고, 이것은 목록발달상 저자기입보다 더 발달된 형태로 평가하였다.⁵⁵⁾

비록 저자주기입의 한국목록규칙(초판 1964년)이 공포된 이후에도 국내에서 서명주기입의 목록과 색인류가 여전히 발간되고 있음은 리재철 교수에 의해 구체적으로 적시된 바 있다.⁵⁶⁾ 이와 같이 서명선기입의 목록이 최근에 이르기까지 편간되고 있는 것은 “그 목록규범에서 정통(正統)의 자리를 앗아간 저자선기입법에 대한 무의식적인 저항이며, 말대신 행동으로의 반대”⁵⁷⁾로 인식하였다.

54) 李載喆, “韓國資料의 書誌의 整理方法에 있어서의 問題點,” p.11.

55) _____, “編纂報告,” 韓國目錄規則, 3版. 記述 標目올림指示篇. 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83. p. 6.

56) _____, “韓國資料의 書誌의 整理方法에 있어서의 問題點,” p.11에서 奎藏閣圖書韓國分目錄(1965), 潤松文庫韓籍目錄(1967), 韓國史研究論文總目錄(1967, 1970), 韓國古書綜合目錄(1968), 在佛韓國關係文獻目錄(1969), 李朝書院文庫目錄(1969), 서울중로도서관 도서목록(고서해제편, 1970), 建國大學校中央圖書館 韓籍目錄(1971), 한국은행도서관 도서목록(고서편, 1971), 韓國圖書解題(1971), 충무처 중앙행정도서관 한서목록(1971), 구한말간행물목록(1972), 藏書閣圖書韓國版總目錄(1972), 藏書閣圖書中國版總目錄(1974)과, 이밖에 표목은 저자명기입을 해놓고 실제 배열은 서명순으로 배열한 목록으로 石洲文庫目錄, 新菴文庫目錄, 海史文庫目錄, 景和黨文庫目錄, 晚松金完燮文庫目錄(1979)이 있음을 예시하고 있음.

57) 위의 글.

한편 서구의 목록학자 사이에서도 저자주기입에 반하여 서명주기입을 목록이론상 우위에 두는 이론을 제시한 바 있다.

1930년대에 이미 목록의 국제적 통일을 위한 방안이 제시되었고 특히 서명으로 시작되는 표준기입의 사용을 제안하면서 이 서명기입을 목록기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파악하였다.⁵⁸⁾

그후 저자기입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미국식 방식에 동의하지 않고, 서지기술은 표준화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원하는 표목을 올릴 수 있는 단위카드의 사용이 제기되었다.⁵⁹⁾

서구에서 저자기입이 서명기입보다 우선하게 된 요인은 특정 저자의 저작을 한자리에 모으기 위한 외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사실상 도서를 기술하는 방법 중에서 이 저자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지적되고 있다.⁶⁰⁾

한편 인용조사를 통하여 서명기입이 저자기본기입보다 검색도구로서 더 유용하다는 지적과 함께, 가능하면 서명을 기입으로서 최대한으로 수용하도록(maximum title coverage) 하는 방안이 제기된 바 있으며,⁶¹⁾ 목록에서 서명으로의 접근이 저자로의 접근보다 훨씬 더 정확하다는 지적도 있었다.⁶²⁾

특히 서명이 도서의 식별수단으로서 저자보다 우선하며 직접적인 검색방

58) Z. Tobolka, "Project d'un code international de regles catalographiques," *ATTI*, vol. 2, 1931, p. 130. 울 Elizabeth L. Tate, "Examining the 'Main' in Main Entry Headings," in: *The Making of a Code; the Issues Underlying AACR2*. Edited by Doris Hargrett Clack.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80. p. 112에서 재인용.

59) Valter Ahlstedt, "Unit Cataloging," *Libri*, vol. 1, no. 2, 1950. p. 132.

60) C. Summer Spalding, "Main Entry: Principles and Counter-Principles," *Library Resources & Technical Services*, vol. 11, no. 4, 1967. pp. 390-391.

61) Elizabeth Lamb Tate, *Effective Main Entries; a Comparison of the ALA cataloguing Code with Seymour Lubetzky's Draft Revision in Relation to Bibliographic Citations*. Chicago, Univ. of Chicago Graduate School, 1965. pp. 153-154.

62) F.H. Ayres and others, "Author versus Title; a Comparative Survey of the Accuracy of the Information which the User Brings to the Library Catalogue," *Journal of Documentation*, vol. 24, 1968. p. 271.

법임을 제시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목록 생산성의 제고와 직원 능력의 향상을 가져 오면서 생산비의 절약과 복본입수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지적되었다.⁶³⁾ 아울러 동양의 서명단위기입(title unit entry)이 서구의 저자기입에 비해 단순하고 표준적이며, 직접적인 접근방법이라고 결론짓고 있다.⁶⁴⁾ 그래서 목록이론이나 실제 목록작성과정에서 저자기본기입원칙을 폐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며 따라서 서명기입에 기초한 규칙의 제정을 제기한 바 있다.⁶⁵⁾ 이밖에 단일기입제를 채택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서명기입이 본질적인 요소로 지적된⁶⁶⁾ 바 있다.

이러한 이론에도 불구하고 독일을 포함한 서구의 목록규칙에서 저자기본기입을 도입한 원인은 중세까지 서구에서는 주로 필사본(manuscript)이 정리의 대상이었는데 이들 필사본의 표제(caption)를 목록자가 작성하였다는 점이다. 저자명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저자명을 목록자가 작성한 표제의 맨머리에 두었다.⁶⁷⁾ 그 예로 “Aristotelis Categoriae”를 들 수 있다. 리 재철 교수에 의하면 동양에서도 “서명이 고유명사화 되기까지는 그 저작의 식별을 저자명에 의해 하였을 것”⁶⁸⁾이고 그 예로 중국의 고전중 저자명과 서명이 똑같은 맹자(孟子), 장자(莊子), 포박자(抱朴子)를 예시하였다. 이같은 사실은 이들 도서를 처음 편목할 당시 고유한 서명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의 목록자가 저자명에 의해 기입한 것에서 연유한 것으로 이해된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목록규칙 중에서도 서명이 없는 경우에는 새로 적당한 서명을 보기(補記)하도록 규정한 점에서나⁶⁹⁾ 가장 최근의 한국목록

63) M. Nabil Hamdy, *The Concept of Main Entry as Represented in the Anglo-American Cataloging Rules*. Littleton, Libraries Unlimited, 1973. p. 48.

64) *Ibid.*, p. 56.

65) *Ibid.*, p. 132.

66) Jay E. Daily, “Title Entry as Unit Entry,” *Library Resources & Technical Services*, vol. 16, no. 4, 1972. p. 438.

67) Julia Pettee, “The Development of Authorship Entry and the Formulation of Authorship Rules as Found in the Anglo-American Code,” *Library Quarterly*, vol. 6, 1936. p. 273.

68) 李載喆, “韓國資料의 書誌的 整理方法에 있어서의 問題點,” p. 11

69) 朴奉石, 東書編目法(講義用 草案). 서울, 韓國圖書館 4280(1947). p. 1의 7조와 이 강의용 초안을 기초로 한 그의 朝鮮東書編目法, 改正版 서울, 國立圖書館, 4287(1964) p. 4의 14조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음.

구척에서도 이러한 흔적이⁷⁰⁾ 남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언어의 역사상, 고유명사는 보통명사보다 후차적으로 발달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⁷¹⁾ 도서는 인간에 의한 소산인만큼 서명의 발달은 인명의 발달보다 나중의 일이다. 따라서 언어의 발달과정에서 고유명사로 정착되기 이전의 서명은 저자명보다 가변요인이 많았을 것이고 자연히 서구에서는 서명보다 저자명이 목록상의 기입으로 우선하여 자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저자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실질적인 면에서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것은 “인물사전(인명사전)이나 인명록류에서 인명이 올림말로 내세워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저작사전이나 도서목록에서 서명이 올림말로 내세워지는 것도 당연한 논리”⁷²⁾인 것이다. 실질적인 면에서는 목록업무에 전산화가 도입되어 검색수단이 다원화됨에 따라 기본기입표목의 개념이 무의미하게 되었다. 즉 기본기입과 부기입은 동일한 레코드에 대한 식별기호로서의 기능만을 지닐 뿐이다. 따라서 목록에서 기입작성시 가장 중요한 점은 기본기입 개념을 배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즉 목록 데이터에 대한 다면적 접근이라는 점에서 모든 기입은 대등한 위치에 있고, 따라서 기본기입이라는 개념은 부적합하다는 지적이다.⁷³⁾ 각종 목록체계(사전체목록, 분할목록 또는 분류목록)에서 실제로 기본기입은 문헌을 검색하는 여러 방안 중의 하나일 뿐이다. 원하는 문헌을 검색하는데 어떤 표목을 대표로 고려할 것인가는 이용자에겐 무의미하다. 원하는 문헌을 빠른 시간내에 찾아볼 수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확한 기본기입을 선정하는 것만큼, 적절한 부기입을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70) 韓國圖書館協會, 韓國目錄規則, 3版. 記述 標目 올림指示篇. 서울, 同協會, 1983. p. 29의 1.1.14에서 '서명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것은 그의 주제 내용에 합당한 서명을 새로 만들어...보기(補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71) 李載喆, “韓國資料의 書誌的 整理方法에 있어서의 問題點,” p. 11.

72) 위의 글

73) Michael Gorman, “Changes in Cataloguing Codes, p. 592.

결국 목록기능상 기본기입과 부기입의 역할상의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저자기입의 중요성은 동일 저자의 문헌을 목록상 한자리에 모을 수 있다는 점에 있다.⁷⁴⁾ 그러나 문헌을 한자리에 모으는데 있어 저자기입이 서명기입보다 우선한다는 이론은 규칙자체에서도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자모순목록규칙에서는 이름이 변경된 단체는 변경된 이름아래 기입하고(407 조), 신·구명을 상호참조로 연결하도록 함으로써 문헌을 한자리에 모으는 것은 상호참조의 기능으로 규정하였다(410 조). 결국 문헌을 한자리에 모으는 것은 기본기입만의 기능으로 볼 수 없다. 이 기능을 완전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표제면상의 모든 저자에 대하여 예외없이 기입해야 하는 것으로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아울러 정확한 표목형식, 상호참조의 도움이 요청된다. 특히 복수기입 제목록에서 기본기입의 실질적인 역할은 무의미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⁷⁵⁾

결국 저작에의 “직접 접근”⁷⁶⁾이라는 점에서 서명기입에 더 중요성을 두어야 할 것이다. 목록에서 서명으로의 접근이 저자로의 접근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⁷⁷⁾ 최선의 식별수단으로서, 이것은 도서뿐만 아니라 비책자자료나 연속간행물에서도 그 효율성이 입증되었다.⁷⁸⁾ 실제로 영미목록규칙(AACR 1967)의 영국판에서는 연속간행물을 서명아래 기입하도록 규정한 점에서도 알 수 있다.⁷⁹⁾ 검색점으로서의 서명은 가장 안정된 요소(the most constant element)이며, 단순하고 기억하기 쉽고, 서지나 데이터 बैं크, 초록이나

74) Seymour Lubetzky, *Cataloging Rules and Principles*. Washington, Library of Congress, 1953. pp. 58-59.

75) Ralph H. Parker, “Book Catalogs,” *Library Resources & Technical Services*, vol. 8, no. 4, 1964. p. 345.

76) 李載喆, “韓國資料의 書誌的 整理方法에 있어서의 問題點,” p. 11.

77) F.H. Ayres and others, “Author versus Title, p. 270.

78) Warren B. Hicks, Alma M. Tillin, *Developing Multi-Media Libraries*. New York, R.R. Bowker, 1970. p. 72. 譯 M. Nabil Hamdy, *op.cit.*, p. 54에서 재인용.

79) Michael Gorman, “The Current State of Standardization in the Cataloging of Serials,” *Library Resources & Technical Services*, vol. 19, no. 4, 1975. p. 303.

색인에서도 다른 기입보다 우수한 기입요소로 지적되고 있다.⁸⁰⁾

이밖에도 목록은 이용자들이 자료에 자유스럽고 동등하게 접근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야 하며 이런 점에서 단체기입은 장애가 된다고 지적하고 서명기입의 사용을 확대 적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⁸¹⁾

결국 기본기입의 선정은 편향된 결정과 임의성에 기초하여 그 선정에 대단히 복잡한 과정과 시간을 요하고 있다. 이것은 무의미한 개념에 지나치게 중요성을 부여한데서 온 결과이다. 특히 국제표준서지기술법의 출현으로 “기본기입의 표목없이도 도서의 서지적 식별”⁸²⁾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것은 “도서의 제일가는 식별요소를 서명으로 삼고 항상 이를 기술의 맨머리에 적고 저자표시를 나중에 적는 방식으로 결과적으로 우리 동양의 전통적 서명주기입법과 일치하는 목록기입법”⁸³⁾으로 변하게 되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전통적 목록법이 독일을 비롯한 서구의 목록법에 비해 우위에 있음을 잘 반영한 것이다.

IV. 결 론

자모순목록규칙(RAK)은 일반적으로 “파리원칙”(Paris Principles)의 기본기입원칙을 수용하고, 특정한 조건하에서는 식별명칭을 지닌 단체를 그 출판물의 기입으로 인정함으로써 단체기입을 새로이 수용하였다. 그밖에 특정한 형태의 출판물(법률, 회의록)에서 서명기입을 확대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단체저자(Urheber)의 확인이 복잡하고, 자료의 형태에 따라 관할구, 서명, 단체명 등이 기본기입으로 사용되고 있고 그 선정기준이 다양함

80) Wesley Simonton, “Serial Cataloging Problems: Rules of Entry and Definition of Title,” *Library Resources & Technical Services*, vol. 19, no. 4, 1975. p. 296.

81) Kirsten Larsen and others, “Hvis er kartoeket?” *Bibliotek*, vol. 70, no. 10, 1980. pp. 315-317 in: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Abstracts*, no. 1, 1981. p. 42.

82) 李載喆, “編纂報告,” pp. 5-6.

83) 위의 글, p. 6

을 알 수 있다.

목록기능과 관련하여 모든 기입은 대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기본기입방식은 목록이론상 낡고 불합리한 규정으로 볼 수 있다. 서지기술의 표준화에 따라 그 의미도 이미 상실하였다. 따라서 기본기입을 포기하고 국제표준서지기술에서 채택하고 있는 서명기입의 도움이 요청된다. 서명기입은 저작에의 직접 접근이라는 면에서 저자기입보다 더 발전된 형태로 평가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입선정에 관한 복잡한 규정을 목록규칙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기입은 기술과 분리, 독립하여 기재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목록작성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동시에 저작에 직접 접근하는 단순하고 간편한 방안이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 朴奉石. 東書編目法(講義用 草案). 서울〔國立圖書館〕4280(1947)
 ———. 朝鮮東書編目法. 改正(판) 서울, 國立圖書館, 4287(1954)
 에센스 독한사전=*Essence Deutsch-koreanisches Wörterbuch*. 許亨根 編. 서울, 民衆書林, 1983.
 李載喆. “編纂報告,” 韓國目錄規則. 3版. 記述 標目 올림指示篇. 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83. pp. 5-6.
 ———. “韓國資料의 書誌的 整理方法에 있어서의 問題點,” 도협월보, 제16권, 제10호, 1975. pp. 9-12.
 韓國圖書館協會. 韓國目錄規則. 3版. 記述 標目 올림指示篇. 서울, 同協會, 1983.
 Ahlstedt, Valter. “Unit Cataloging,” *Libri*, vol. 1, no. 2, 1950. pp. 113-170.
 Ayres, F.H. and others. “Author versus Title; a Comparative Survey of the Accuracy of the Information which the User Brings to the Library Catalogue,” *Journal of Documentation*, vol. 24, no. 4, 1968. pp. 266-272.
 Braun, Hellmut. “Verfasser und Urheber,” in *Aktuelle Probleme der Bibliotheksverwaltung*. Herausgegeben von Ewald Wagner, Wiesbaden, Otto Harrassowitz, 1966. pp. 41-51.
Cassell's German-English, English-German Dictionary. Completely revised by Harold T. Betteridge. London, Cassell, 1978.
 Daily, Jay E. “Title Entry as Unit Entry,” *Library Resources & Technical Services*,

- vol. 16, no. 4, 1972. pp. 433-444.
- Ellinger, Werner B. "Catalog Entries for Primary Legal Sources," *Library Resources & Technical Services*, vol. 12, no. 3, 1968. pp. 352-358.
- Escreet, P.K. *Introduction to the Anglo-American Cataloguing Rules*. London, Andre Deutsch, 1971.
- Fuchs, Hermann. *Kommentar; zu den Instruktionen für die alphabetischen kataloge der Preussischen Bibliotheken*. 2., durchgesehene Auflage. Wiesbaden, Otto Harrassowitz, 1958.
- Gorman, Michael. "Changes in Cataloguing Codes: Rules for Entry and Heading," *Library Trends*, vol. 25, no. 3, 1977. pp. 587-602.
- _____. "The Current State of Standardization in the Cataloging of Serials," *Library Resources & Technical Services*, vol. 19, no. 4, 1975. pp. 301-313.
- _____. *A Study of the Rules for Entry and Heading in the Anglo-American Cataloguing Rules, 1967, British Text*. London, the Library Association, 1968.
- Hamdy, M. Nabil. *The Concept of Main Entry as Represented in the Anglo-American Cataloguing Rules*. Littleton, Libraries Unlimited, 1973.
- Hanson, J.C.M. *A Comparative Study of Cataloging Rules Based on the Anglo-American Code of 1908*,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39.
-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ataloguing Principles. *Report*. London, IFLA International Office for UBC, 1981.
- Kaiser, Rudolf. "Vergleichung der englisch-amerikanischen Katalogregeln mit der preussischen Instruktion und die Frage einer internationalen Einigung," *Zentralblatt für Bibliothekswesen*, vol. 28, 1911. pp. 412-430.
- Kaltwasser, Franz Georg. "Entstehung, Strukturen und Anwendung der neuen Regeln für die alphabetische Katalogisierung(RAK)," *Zeitschrift für Bibliothekswesen und Bibliographies*, vol. 21, 1974. pp. 1-22.
- _____. "The New German 'Rules for Alphabetical Cataloguing(RAK)' and Their Position in the International Framework," *IFLA Journal*, vol. 1, no. 4, 1975. pp. 276-284.
- Koel, Ake I. "Can the Problems of Corporate Authorship be Solved?" *Library Resources & Technical Services*, vol. 18, no. 4, 1974. pp. 348-354.
- _____. "The Corporate Complex(Including Choice and Form of Entry)," in: *The Making of a Code*, Edited by Doris Hargrett Clack.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80. pp. 164-174.
- Lais, Rudolf. "Cataloguing and Bibliographic Developments i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International Cataloguing*, vol. 12, no. 3, 1983. pp. 27-35.

- Langer, Manfred. "Zur Frage der Eintragungen unter Urhebern nach den Regeln für die Alphabetische Katalogisierung(RAK)," *Zentralblatt für Bibliothekswesen*, vol. 91, 1977. pp. 363-367.
- Larsen, Kirsten and others, "Hvis er kartoeket?" *Bibliotek*, vol.70. no.10, 1980. pp. 315-317 in: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Abstracts*, no.1, 1981. p.42.
- Lubetzky, Seymour. *Cataloging Rules and Principles*. Washington, Library of Congress, 1953.
- Osborn, Andrew D. "Cataloging and Cataloging Code in Other Countries Today," *Library Quarterly*, vol. 26, 1956. pp. 276-285.
- Parker, Ralph H. "Book Catalogs," *Library Resources & Technical Services*, vol. 8, no. 4, 1964. pp. 344-348.
- Pettee, Julia. "The Development of Authorship Entry and the Formulation of Authorship Rules as Found in the Anglo-American Code," *Library Quarterly*, vol. 6, 1936. pp. 270-290.
- The Prussian Instructions; Rules for the Alphabetical Catalogs of the Prussian Libraries*. Translated from the Second Edition, Authorized August 10, 1908, with an Introduction and Notes, by Andrew D. Osborn.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38.
- Regeln für die alphabetische Katalogisierung; RAK*. Autorisierte Ausgabe, Unveränderter Nachdruck, Wiesbaden, Reichert, 1980.
- Simonton, Wesley. "Serial Cataloging Problems; Rules of Entry and Definition of Title," *Library Resources & Technical Services*, vol. 19, no. 4, 1975. pp. 294-300.
- Spalding, C. Summer. "The Anglo-American Cataloging Rules; Background, Development, Problems, and Essential Characteristics," in: *The Code and the Cataloguer*. Edited by Katherine H. Packer and Delores Phillips.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69. pp. 3-19.
- _____. "Main Entry; Principles and Counter-Principles," *Library Resources & Technical Services*, vol. 11, no. 4, 1967. pp. 389-396.
- Statement of Principles*, Adopted by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ataloguing Principles, Paris, Oct., 1961. Annotated Edition with Commentary and Examples by Eva Verona. London, IFLA Committee on Cataloguing, 1971.
- Tait, James A. *Authors and Titles; an Analytical Study of the Author Concept in Codes of Cataloguing Rules in the English Language, from that of the British Museum in 1841 to the Anglo-American Cataloguing Rules 1967*. London, Archon Books, 1969.
- Tarnberg, Nora. *The Development of Uniform Bibliographic Principles as the Basis for*

- Multi-National Cataloging Codes and Internationally Compatible Bibliographic Standards*. University of Pittsburgh, 1981.
- _____. "Trends Toward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f Bibliographic Elements; German Cataloging Reform," *Library Resources & Technical Services*, vol. 18, no. 4, 1974. pp.355-371.
- Tate, Elizabeth L. *Effective Main Entries; a Comparison of the ALA Cataloguing Code with Seymour Lubetzky's Draft Revision in Relation to Bibliographic Citations*. Chicago, Univ. of Chicago Graduate School, 1965.
- _____. "Examining the "Main" in Main Entry Headings," in: *The Making of a Code: the Issues Underlying AACR2*. Edited by Doris Hargrett Clack.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80. pp.109-140.
- Vasilevskaya, V.A. "Limits to the Use of Entries under Corporate Authors; the Cataloguing of Laws and Treaties," in: ICCP, *Report*(Working Paper no.5). London, IFLA International Office for UBC, 1981. pp.165-174.
- Verona, Eva. "The Approach in RAK to Corporate Authorship; the Role of Originator," *International Cataloguing*, vol.3, no.4, 1974. pp. 3-4.
- _____. *Corporate Headings; Their Use in Library Catalogues and National Bibliographies, A Comparative and Critical Study*. London, IFLA, 1975.
- _____. "A Historical Approach to Corporate Entries," *Libri*, vol. 7, no.1, 1956. pp. 1-40.

Development of the Corporate Entry in German Cataloging Rules

Tae-Soo Kim*

Abstract

The RAK has in general adopted the provisions of the paris principles to a far greater extent than many other cataloguing codes. And the analyses confirm that the determination of the main entries in German cataloging rules is a rather complex process and one which can result in inconsistent, arbitrary decisions. And the selection of the main entry requires a considerable amount of decision making which is time-consuming and costly.

From the point of view of computers, all entries are equal as points of retrieval. In light of the above considerations the most important recommendation to be made is that the main entry principle be abandoned from cataloging theory and practice and be replaced by the title entry. It would eliminate the need for personal judgments required by the present rule. In so doing, it would bring uniformity and Standardization to cataloging practice. Use of the title entry would reduce the time and effort spent on the selection of the main entry which serves no important purpose in the catalog. Therefore title entry is more developed finding device than author entry in direct approach for document retrieval.

〈접수일자 90. 10. 10〉